

전자서명법 제정추진

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정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(안)을 마련. 그동안 산·학·연등 관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, 7차에 걸친 작업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법(안)은 98년 정기국회 제출 목표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PC통신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.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서명 통일규격 제정작업등 해외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과

제안목적

-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등 정보의 안전·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거래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제안이유

- 전자거래는 비접촉,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

-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진위와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보하기 어렵고,
-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하거나
- 전자문서 등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위·변조하는 사기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
 - 현재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하여, 신뢰받는 제3자(인증기관)가 거래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 등의 법적효력 부여
 - 공인인증기관 등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일반 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도록 함.(안 제3조)
 - 인증받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도록 함(안 제4조)
-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허가 및 인증기관 관리제도
 - 전자서명 인증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허가하는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
 - 기술적·재정적 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임·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(안 제6조 제7조)
 -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증실무준칙의 인가, 인증기관의 업무 휴·폐지 등 인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내지 제11조)
 - 공인인증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취소, 업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, 제13조)
- 인증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
 -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인증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·효력정지·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

정함(안 제14조 내지 제19조)

○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

- 인증업무의 안전·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- 인증서 변조방지대책 강구, 안전·신뢰성있는 인증관리체계 운영, 전자서명키의 안전한 관리, 인증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 등 의무를 규정함(안 제20조 내지 제22조)
- 인증기관이 법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함(안 제23조)

○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설립·운영

- 전자서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인증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에 대한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증관리센터를 설립·운영함(안 제24조, 제25조)

○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보호

-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안전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, 타인의 전자서명키 도용행위 등을 금지함(안 제27조)

○ 인증업무관련 개인정보 보호

-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의 제한,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)

○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인증

- 전자거래에 범세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국제협정에 의하여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